

쿠웨이트사태의 영향과 최근의 에너지소비실태 및 소비절약 강화시책

- 동력자원부

I. 쿠웨이트 사태가 石油수급에 미치는 영향

1. 원유 도입 및 가격 영향

- 쿠웨이트, 이라크 양국에서의 原油도입량은 109천 B/D 규모로 '90 상반기 總 원유 도입량의 11.8% 차지

- 이라크에서 하반기 도입물량(360만배럴) 선적시기는 9월 및 12월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선적 가능
- 양국은 페르시아만 서북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국에서의 원유수송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

〈쿠웨이트 및 이라크 원유도입 현황〉

(단위 : 百萬B, ()内는 점유율%)

	1989	1990상반기	1990하반기(계획)	1990전망
中 東	216(72.7)	126(75.1)	122(75.0)	248(75.0)
- 쿠웨이트	15(5.1)	13(7.6)	12(7.2)	25(7.6)
- 이라크	6(1.9)	7(4.2)	4(2.5)	11(3.3)
총 도입량	296	168	162	330

- 原油 선적 곤란으로 당분간 양국에서 원유도입 차질 발생

2. 대책방안

- 수급안정대책
 - 민관합동진급대책반 구성운영(8.2)
 - 해외개발유전지분원유(北예멘 마리브 및 이집트 칼다油田) 및 멕시코, 리비아정책원유 확보추진 : 약 5만B/D
 - 정부비축 석유공급계획 수립(정부비축 물량 : 39

導入先	선적물량	선적일자	도입회사
쿠웨이트	130만B	8. 3	極東精油
쿠웨이트	120만B	8. 16	極東精油
이라크	100만B	8. 23	油 公
쿠웨이트	100만B	8. 28	油 公
總도입량	450만B		

(단위 : 증가율, %)

	1980~1985	1986~1989	1990. 1~5	구성비(%)
石油	0.5	11.0	24.4	53.9
(전력)	(8.5)	(12.8)	(16.6)	-
유연탄	22.5	8.6	5.9	15.2
원자력	32.1	29.7	13.6	14.2
무연탄	5.4	△2.2	△6.5	11.3
기타	△2.7	13.0	14.4	5.4
합	4.5	9.7	14.7	100.0

• 제조업에너지소비는 重化學部門의 비중증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나, '89년부터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부가가치증가율을 상회하여 에너지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.

	1986	1987	1988	1989	1990. 1/4분기
제조업성장률(%)	18.4	18.8	13.4	3.7	7.1
제조업에너지소비 증가율(%)	8.6	13.8	15.0	9.2	13.7
제조업에너지의 부가가치 탄성치	0.46	0.73	1.12	2.49	1.93

(단위 : %)

	1980	1985	1987	1989	1990. 1~5
• 해외의존도 (연탄소비증가율)	73.5 (6.1)	76.2 (8.4)	80.0 (△2.7)	85.5 (△12.5)	86.7 (△6.5)
• 총수입에 대한 에너지수입비중	29.6	23.4	15.1	12.2	14.8

• 또한 최근 에너지소비증가는 주로 石油에 의해서 주도됨으로써 總에너지중 石油비중은 다시 1, 2차

석유위기시의 수준으로 환원되고 있음.

	1973	1979	1985	1987	1989	1990. 1~5
石油비중(%)	53.8	62.8	48.2	43.7	49.6	53.9

• 에너지소비는 2차 석유위기이후 소득보다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'86년이후 지속적인

에너지가격 인하가 최근의 소비급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'90. 5월 현재 소비자물가와 에너지가격지수 비교

('86. 1월 = 100)

소비자물가	등유	경유	휘발유	도시가스		연탄	전력
				(취사용)	(난방용)		
128	56	54	57	69	51	114	81

도시근로자 가구당 光熱費 소비지출

(단위 : 천원)

1989. 1 / 4분기	1990. 1 / 4분기	증감률 (%)
30.8	35.3	14.6

2. 문제점 및 과제

- 최근의 에너지소비는 그동안 지속적인 국내외의 에너지가격 하락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 다소비경향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.
- 에너지소비 내용을 보면 산업부문보다 가정 및 서비스부문에서 크게 증대되고 있고, 石油, 전력등 고급 에너지 위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.
- 또한, 石油 및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함에 따라 정유공장 가동률이 100%를 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, 전력도 공급예비율이 적정선을 하회하고 있어 국내 에너지안정공급기반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.
- 한편, 최근 쿠웨이트사태 직후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이로인하여 '90년대중반에 올 것으로 예상되던 고유가 시대가 앞당겨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.
-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Ⅲ. 에너지소비절약 강화시책

1. 기본방향

-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에너지가격에 관계없이 에너지절약은 필수적인 과제로서, 종래와 같은 규제시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향후의 정책 방향은 원천적 절약유인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과소비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시책을 병행할 계획임.
- 에너지低價格이 특히 비생산적 소비성부문의 과소비 현상 유발→에너지가격 차등제도의 도입으로 낭비요인 최소화 유도→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문의 소비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
 - 노후시설개체등 단순절약기법은 이미 보편화되어

한계에 도달→새로운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촉진으로 절약 극대화

- 에너지 절약투자의 경제성 저하로 절약투자 의욕 크게 위축→절약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
- 에너지환경의 호전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절약의식은 크게 이완됨.→절약정신 재무장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

2. 주요시책

(1) 과소비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

생활에 다소 불편이 수반되더라도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에너지 과소비 부문은 타율적인 소비억제시책을 일부 도입

① 기존 각종 절약시책(122종)의 조정 보완

② 새로이 추진이 필요한 절약시책(例示)

- 사우나등 에너지多消費型 호화·사치성건물 신축제한
- 주유소 영업시간 일부 제한'
- 신축되는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 제한
-가스 또는 지역난방 열이용 냉방방식 확대
- 승용차의 연비 하한선 설정(수입차 포함)
- 대형에어콘에 대한 특별소비세 증과세

(2) 에너지가격정책을 통한 소비절약유도

過消費가 억제되도록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하고, 소비절약 유도를 위하여 생활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에너지가격 재조정 추진

① 자가용승용차의 휘발유 과소비 억제

- 휘발유 소비억제를 위한 증과세 방안 강구
- 현행 자동차세중 중대형차 격차 확대
- ② 에너지 多消費期間 할증가격제(비수기 할인제) 도입

• 하절기 負荷管理 전력요금제 강화로 소비 억제 및 수요관리

-이미 시행중인 계절별, 시간대별 차등요금 폭을 확대하고

-電力 다소비처와 사전협약에 의해 전력수요 집중을 조절하는 새로운 수요억제·요금제도의 도입 시행 ('90. 5. 1부터 시행)

• 냉방용 가스요금 및 신도시의 열요금 할인제 도입으로 전력 대체 유도

③ 非生産部門의 전력소비 억제

- 업무용 요금을 세분화하여 호화·사치성업소에 대한 차등요금 부과방안 검토
- (3) 에너지低消費型 경제·사회 시스템화 실현
 -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구조적·제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도록 산업구조·수송체계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개편 추진
 - ① 에너지低消費型 산업구조로의 개편 촉진
 - 에너지多消費工場의 신·증설 억제 및 절약형 시스템 도입
 - 신·증설시 에너지사용계획 정밀 검토(에너지관리공단)
 - 열병합발전소등 절약형 시스템 도입
 - 에너지低消費型 첨단산업 및 에너지절약 기자재 산업 적극육성
 - ② 수송용 에너지소비급증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체계의 합리화
 - 에너지절약형 대량 에너지수송시스템의 구축으로 수송용 에너지절감
 - 대량 유류 수송을 위한 전국 송유관 배관망 건설추진
 - 배관망에 의한 가스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대폭 확충
 -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수송체계 합리화로 효율성 제고
 - 지하철등 대중교통체계 구축
 - 대도시 소통난 완화대책 강구로 주행효율 개선
 - ③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 확산
 - 에너지절약계획서 심사(허가시) 내실화 및 열손실방지조치 확인 철저
 - 에너지시설 중앙제어시스템 도입 및 자동화 장치 보급 확대
 - ④ 폐자원(폐열·쓰레기) 재이용 체제 구축
 - ⑤ 주요 경제·사회 개발사업 추진시 에너지영향평가 강화
- (4) 원천적 절약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

단순절약 기법의 한계극복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원천적인 절약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을 촉진

- ① 에너지절약 실용화기술 중점 개발 추진
-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통 애로 기술 파악·분석
 - 산업체·건물·수송등 각 부분별 특별조사 실시
- 연구·개발투자 확대 및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
 - 민간기업체의 실용화기술 개발은 에너지관리공단 주도하에 적극 추진
 - 개발비용 지원 확대(현재 연1억원 수준)
 - 장기·기초기술은 정부 주도하에 적극 추진(현재 연10억원 수준)
- 에너지관리공단내에 연구·개발 및 기술정보 전담조직 확충·보강
 - 연구·개발 및 보급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
 - 국내·외 절약 신기술정보를 수집·분석 Data Bank化→업체 제공
- ② 에너지절약 신기술의 보급 추진
- 우수 에너지절약 기술의 도입 확대를 위한 유인시책 강화
 - 우수 절약기술 도입시 장기저리의 우대자금 융자지원
 -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을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비용 일부 지원
- ③ 에너지절약투자사업 전문기업 도입·육성
- (5) 집단에너지공급체계의 획기적 확대
 -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(20~30%)하며, 공해 배출원의 집중관리로 대기오염을 크게 감소(50%이상)시키고, 양질의 에너지공급으로 생산성향상 및 연속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개별 공급방식을 지양하고 집단 공급방식을 주택 및 공장에 적극적으로 도입
 - ① 대규모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지역난방방식 도입 확대

	盆 唐	坪村/山本	一 山	富川 中洞	水西/大峙	計
세대(천세대)	98	85	119	68	60	430
공사비(억원)	1,214	904	1,255	700	571	4,644

(주) 發電所 건설비 11,017億원 제외

-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및 중·장기 에너지절약계획 수립·시행
- 품목별 목표 에너지원단위 설정·관리
- 업체별 에너지 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활성화
 - 에너지관리자 적극 활용
 - 주기적인 에너지소비실태 점검 및 개선책 강구
- 에너지 소비절약 시설투자 확대
 -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한 손실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강구
 - 공정개선, 저효율 설비대체,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추진
 - 해외 우수 에너지절약 신기술 도입
- 폐열회수 이용 확대
 - 폐열회수 장치 설치로 폐열의 최대한 이용
 - 잉여열의 인근 주거지역 공급 방안 강구
 - 폐기물, 폐가스등 적극 활용
- 에너지절약 기술개발·보급 적극 추진
 - 자동차, 가전제품등의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 개발·보급

- 가전제품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효율(소비전력) 표시
- T·V, 냉장고등 구형제품의 절약형 신제품 교환 판매제도 실시
- 대기업의 우수 절약기술의 중소기업 전파
- 건물 단열화 추진
 - 신축건물의 단열재 사용 철저(建築法)
 - 末 단열 주택의 단열화 추진
- 보일러 설치·시공 철저
 - 신건물의 경우 보일러 설치·시공확인 제도 실시중
 - 기존 주택의 경우 유자격 시공자에 의한 설치·시공
- 월동기 사용유류 사전 구입
 - 월동기 석유수요 급증과 수송애로등으로 적기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수기중에 구입·비축요망
 - 대상 : 관공서등 공공기관, 다소비업체 및 대단위아파트단지
 - 구입 유류인수는 일과후나 공휴일 활용

◎ 동력자원부 고시 제90-49호

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

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 고시(동력자원부 고시 제89-10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.

1990년 8월 8일
동력자원부장관

제1조(수입금의 징수금액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조(수입금의 징수금액)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납부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(프로판, 부탄 및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은 제외한다) 1배럴당 미합중국통화 0.05에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부 칙-

1. 이 고시는 1990. 8. 11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